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인터넷 기사에 게시되는 과잉 광고에 대한 규제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정빈
건명	인터넷 기사에 게시되는 과잉 광고에 대한 규제
소개년월일	2015년 1월 28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박한결 외 14명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7회 청소년의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저희는 인터넷 기사에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 방해를 받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게시되는 과잉 광고 및 유해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p> <p>저희의 입법 청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p> <p>-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p> <p>→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며, 광고 창을 닫는 표시는 가로×세로 0.7cm 로 규정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제 5항을 추가한다.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뉴스 내용의 기사와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를 분류하고 각각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동반하지 못하도록 한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인터넷뉴스기사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들이 기사의 원문을 가려 정보전달에 장애가 된다. 또한 광고가 삭제되는 과정이 까다로워 의도치 않게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 검색한 기사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게 되며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배가 된다. 학부모정보감시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사 하나에 최대 100개의 광고가 붙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광고를 일일이 지워야하는 과정에서 복잡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 조사를 통해 인터넷광고심의규정이 무용지물임을 알 수 있으며 기사를 악용한 인터넷 광고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 독자들의 짜증까지도 유발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문화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의원들과 논의해 본 결과 모든 의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공감했다. 심지어 청소년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들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위와 같은 광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청소년들 또한 위 광고에 관심을 갖지 않아 서로 민망한 상황을 연출한다. 광고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에서도 청소년들의 동심을 공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양 측의 공리를 위해 게시판을 차별화하여 광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 받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제제와 광고 표시에 대한 제제가 가해지고는 있으나 이의 범위가 모호하고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안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뉴스 기사를 통한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뉴스 기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2. 주요골자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에서 ‘광고 창을 닫는 표시는 가로×세로 0.7cm 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며, 광고 창을 닫는 표시는 가로×세로 0.7cm 로 규정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뉴스 내용의 기사와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를 분류하고 각각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동반하지 못하도록 한다.’ 는 조항을 제정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p>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p> <p>-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p>	<p>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p> <p>-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며, 광고 창을 닫는 표시는 가로×세로 0.7cm 로 규정한다.</p> <p>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제 5항 추가</p> <p>- ⑤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뉴스 내용의 기사와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를 분류하고 각각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아니한 내용의 기사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동반하지 못하도록 한다.</p>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